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4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(안 제14조의2)

-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 : 150원 ⇒ 250원
-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: 500원 ⇒ 600원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3. 3. ~ 3. 2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“150원”을 “25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0원”을 “6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부서 개정안
<p>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150원</u>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500원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50원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600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
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세무1과 김나진 (☎ 02-3153-8715)